

## 2026년 제주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고

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우수 공연 콘텐츠의 타 지역 유통을 지원하여 예술단체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와 관객 개발을 촉진하고자 「2026년 제주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. 7.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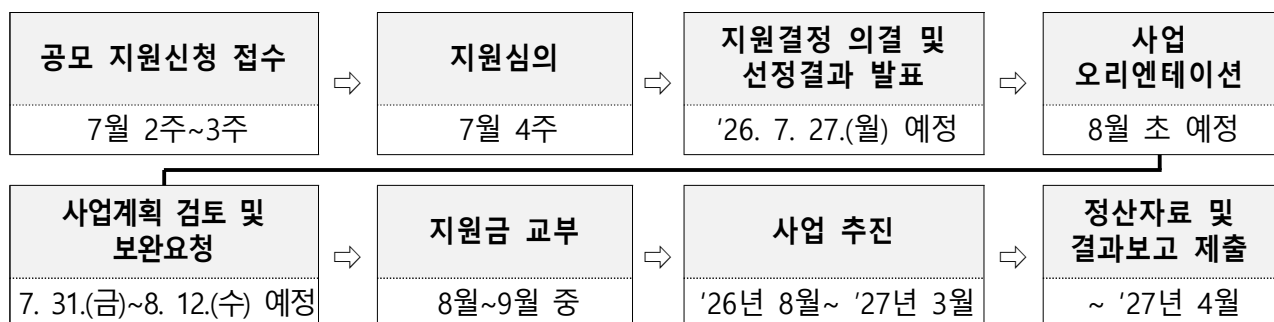
(재)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

### 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6년 제주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년 7월 ~ 2027년 4월 ※ 공연기간: ~ '27. 3. 28.(일)
- 지원내용: 기제작된 창작공연(레퍼토리)의 서울·제주 제외한 타 지역 공연 유통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규모: 총 2억원 (단체당 최소 5천만원 ~ 최대 7천만원 지원)
- 주최·주관: 제주문화예술재단
- 후원: 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

### □ 공고 개요 및 추진 일정

- 공고기간: 2026년 7월 2일(목) ~ 7월 16일(목)
- 접수기간: 2026년 7월 3일(금) 10:00 ~ 7월 16일(목) 17:59
- 결과발표: 2026년 7월 27일(월) 누리집 공고 예정
- 추진일정



## 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○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연 예술단체

-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연 예술 단체
- 최근 3년간(2024년 ~ 2026년) \*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  
\*상주단체, 예비 상주단체, 공공 공연장 연계 창·제작 지원 선정 단체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청소년, 시민(아마추어) 참여 주도의 공연 콘텐츠
- 국고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지원받은 공연 콘텐츠
- 당해 연도 5월까지 초연되지 않은 신작

○ 주요요건

① 서울·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의 공연시설 최소 2개소에서 각 1회 이상 공연 진행

- 공연 장소와 대관 추진 현황을 지원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
- 공연장과의 협의 여부, 공연장 확보 가능성, 관객 개발 및 홍보 계획 등은 심의 시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됨

② 제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기제작 레퍼토리 공연 콘텐츠

- 1회 이상 상연 실적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(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, 다원) 창작 공연(레퍼토리) 콘텐츠
- 제주 고유의 역사·문화·자연·공동체 등 지역 문화적 특성이 반영
- 기존 상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와 공연 운영 역량이 검증되었으며, 타 지역 공연장 유통이 가능한 수준의 콘텐츠

③ 장당 정가 1만원 이상 유료 티켓 판매 필수

-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, KOPIS 공연별 통계티켓 판매 실적이 공개됨
- 무료 초청은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오픈 객석 수의 10% 이내 운영 가능

## □ 지원 신청

### ○ 제출자료

| 제출자료     | 작성 양식 및 제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① 지원신청서  | - 지원신청서(HWP) 작성<br>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제출 단계에서 파일 첨부<br>※ 사업자등록증,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,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| 필수 |
| ② 콘텐츠 자료 | - 콘텐츠 영상, 팸플렛, 기사<br>- NCAS 파일 첨부 혹은 지원신청서 내 공연 영상 URL 삽입<br>※ NCAS 첨부파일 허용량은 100MB          | 선택 |

○ 신청방법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마이페이지 정보를 반드시 최신화 해야함  
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경력 사항 등)

※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7시 59분 59초 최종 제출 이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공모 마감 이후에는 수정 불가

## □ 심의 방법

### ○ 심의절차

| (1차) 행정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차) 서류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| (3차) 최종 심의 의결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<br>제출 서류 확인                |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<br>검토                 | 심의 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<br>행정심의 결격사유 있을 시<br>행정심의 탈락 | ▶ 심의 지표에 따른<br>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<br>검토 | ▶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<br>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 |

○ 행정심의 결격 사유

- 타 사업에 지원 신청(NCAS 공모사업 잘못 선택)
- 필수 서류(지원신청서) 미제출 및 양식 미준수
- 지원자격 미충족 및 부적격 단체
- NCAS 마이페이지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상이한 단체

○ 서류 심의 기준

| 심의기준                | 주요 심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콘텐츠의<br>우수성 및 시장성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의 예술적 완성도 및 작품성</li> <li>- 제주 외 타 지역 관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성과 공연 경쟁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|
| 제주 문화<br>브랜드 가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의 고유한 역사·문화·자연·공동체 가치 등이 콘텐츠에 반영된 정도</li> <li>- 지역 문화 자원의 창의적 해석 및 예술적 구현 수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유통 계획의<br>적합성 및 타당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지역 공연장(2개소 이상) 확보 및 매칭의 확실성</li> <li>- 원정 공연 운영, 현지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의 적절성</li> <li>- 사업 추진 체계, 일정, 예산 계획의 합리성</li> </ul> | 30 |
| 사업 수행 역량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 유통을 위한 예술·기획·행정 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 수준</li> <li>- 신청 단체 및 참여 인력의 관련 분야 활동 실적과 원정 수행 역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
※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사업 예산 편성

| 세목             | 항목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수용비          | 사례비       | · 출연, 기획, 연출 등 개인 사례비 ※ 원천세 포함 세전 금액 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· 대표자 사례비 총 지원금 20% 이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<br>※ 법인단체 및 고유번호단체(‘소득세법’에 따라 대표자의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단체)만 편성이 가능하며, 직접적인 활동(기획, 연출, 출연 등)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<br>※ 국립·도립 문화예술 기관·단체 소속 예술인은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사례비 편성 불가<br>※ 국·공립 초·중·고·대학 소속 전임 교직원들은 사례비 편성 불가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· 홍보물 제작, 디자인, 온·오프라인 홍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· 무대, 세트 등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·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· 도록, 서적 발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기타운영비     | ·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(작품, 악기 운송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공요금 및 제세      | 공공요금 및 제세 | · 홍보물 발송 우편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차료            | 대관료       | ·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, 부대시설, 연습실 대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임차료       | · 장비, 물품, 전산 프로그램(플랫폼 구독료) 등의 임차료<br>※ 실사업 기간까지 임차 비용 인정<br>※ 렌트카 이용료 편성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리후생비          | 복리후생비     | ·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비             | 여비        | · 도외 항공·선박비 및 숙박비<br>※ 단순 견학·조사, 회의, 행사 답사 등 편성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사용불가 항목</b> |           | <b>세부 내용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상적인 운영경비      |           | · 단체 운영 경비 (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)<br>· 각종 수수료 (인증서발급 수수료, 송금수수료, 취소·변경 수수료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위탁 방식의 용역비    |           |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재위탁하는 방식의 용역비<br>※ 단, 공연콘텐츠 홍보물 제작, 온·오프라인 홍보 대행의 경우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본 형성적 경비      |           | · 개인, 단체가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, 기존 자산을 수선·증축 하는 비용 (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 설비 등)<br>※ 자산: 소모성이 아닌,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것<br>※ 사업 수행 시 대체 불가 물품의 경우 지원금 총액의 5% 이내, 최대 30만원까지 집행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비 및 기념품 등 비용  |           | · 식비, 다과비,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 |           | · 상금, 심사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사항          |           | ·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<br>·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<br>·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예술인 고용보험, 상해보험 등 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필수 편성

※ 지급대상이 신청 단체 대표자인 경우 명시

※ 선정 이후 당초의 ‘총 사업비 내 사례비 편성 비율’ 대비 증액 불가

※ 과세사업자인 경우, 보조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(산출근거는 총지급액 기준 작성)

## □ 유의 사항

-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공통 안내사항

### 1. 지원자 의무사항

- 상해보험, 예술인 고용보험 필수 가입
- 참여 예술인 인권 보호 의무
-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
- 사업자 유지 의무 (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자 유지)
-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
- 선정 후 ‘대표자 및 실무자’는 교부 신청 시, 아래의 교육 수강 의무
  - [예술인] 예술인 권리보장법 무엇이 달라지나 /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
  - ※ 그 외 참여자들은 ‘서약서’ 서명 후 교부신청서 내 제출 필수
- 선정 후 ‘대표자 및 실무자’는 공연 예정인 공연장의 온·오프라인 안전 교육 이행
- 지적재산권, 저작권, 초상권 보호를 위한 노력
- 성희롱,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
- 주최, 주관, 후원 표기

### 2. 제출 자료 관련

- 사전에 공지된 필수 제출서류 외 임의 첨부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음
-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의 배제
- 활동 실적 증빙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
- 첨부파일(영상, 음원파일) 혹은 기입한 링크가 실행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
- ※ 파일 실행 불가, URL 연결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
### 3. 지원 부적격 사업

-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- 사업 수행 인원 중 50% 이상이 초·중·고·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
-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
- 기획재정부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

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다만,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)

-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-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,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
-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
-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

※ 심의 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## 5. 기타

- 지원신청, 교부,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) 사용
-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원 신청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
-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과도하게 변경·축소되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음
-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 필수
-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

○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□ 문의

○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064-800-9152, 9156